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안학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 제10조의2에서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6항 삭제(안 제10조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7항)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을 “대안학교는”으로, “대치할 수 있다”를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제10조의2(산학겸임교사 등) <삭 제>
②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삭 제>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 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삭 제>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 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안학교는 ----- -- 대체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연 락 처	(044) 203 - 6520